

1. 개정 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4.2.6, 시행 '25.8.7)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20조 개정)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4.2.6, 시행 '25.8.7)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,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내지
제9호에 따른 물질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